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4월 9일

- 회부일자 : 1996년 4월 9일

3. 개정이유

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도 심의회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도·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심의

- 종전에 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군 지역은 군 건설종합계획(안)을 수립하여 도 심의회 심의후 도에서 승인

-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개정되어 도·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 건설종합계획(안)을 도 심의회 도지사가 심의회 승인토록 변경됨에 따라 금회 정비

나. 도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 변경된 심의회 위원 명칭 정비

- 부지사를 "행정부지사"로 하고
- 지역경제국장을 "공업경제국장"으로 하며
- 건설도시국장을 "건설교통국장"으로 하고
- 종전의 간사 (지역계획과장) 및 서기 (지역계획계장)을 "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" 및 "업무주관계장"으로 함.

5. 검토의견

-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조례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도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 변경된 당 조례 심의회 위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인 바,
- 도, 농 복합형태의 시(충주,제천)지역의 시 건설종합계획(안)을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서 도 심의회 심의후 도지사 승인으로 개정하고,
- 직제개편에 따라 "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"지역경제국장"을 "공업경제국장"으로 "건설도시국장"을 "건설교통국장"으로 "간사 및 서기"를 "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 및 업무주관계장"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